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정청구 등에 따른 부정이의 등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에 포함되는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(일할)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자의 계산 방식을 현행 ‘월할’에서 ‘일할’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
까지의 개월 수로”를 “날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의 전일까지로”로
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달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, “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
까지의 개월 수로”를 “날의 전일까지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수 이자 계산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
이 영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환수금액의 산정 등) ①·② (생략)	제3조(환수금액의 산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 다만,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<u>달부터</u> 부정이익을 반환한 <u>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</u> 한다.	③ ----- ----- <u>날부터</u>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의 <u>전일까지로</u> ----. 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날부터</u> ----- <u>날의 전일까지로</u>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0 - 7644